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4.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한 20년 이상 장기근속 퇴직예정자의 국·내외 연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기진작 및 일하는 근무 분위기 조성

2. 주요내용

- 가. 장기근속자 국내·외 연수 대상 조정(안 제15조제8호가목)
-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 20년 이상 장기근속 퇴직예정자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력증진을 위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불임.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8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20년 이상 장기근속 퇴직예정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 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과 그 가족(배우 자 또는 자녀)을 대상으로 하 는 국내·외 연수	8. ----- ----- ----- -----
가.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가. 20년 이상 장기근속 퇴직 예정자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9. · 10. (생 략)	9. · 10. (현행과 같음)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제15조제8호가목의 개정에 따른
장기근속자 국·내외 산업연수 시찰 확대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재직기간 20년 조정에 따른 국내외 연수 추가 소요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
- 산출내역 : (평균)20명 × 2,500천원 × 1식 = 50,000천원

4. 작성자

총무과 후생복지계장 김팔근 (480-6791)

총무과 행정8급 김성미 (480-6793)

소관 실·과		총 무 과
입 안 자	과 장	권 순 형
	담 당	김 팔 근
	담 당 자	김 성 미 (480-6793)